

# 2024학년도 1학기 온라인 외국어 교과목

## 외국인 초빙교원 공개채용 공고안

### 1. 채용 분야

연번	학과(부)	채용예정 인원	담당예정과목		비고
			(2024학년도 1학기)	(2024학년도 2학기)	
1	국제협력부	7명	총 10과목	총 10과목	외국인초빙교원

※ 2024학년도 2학기 담당예정과목은 교과과정 변경, 수강신청 인원 등에 따른 분반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의 지원 과목 숫자 및 학과 숫자는 제한 없음

※ 지원 학과(부)가 여러 학과(부)인 경우 각 학과(부)마다 지원서 작성하여 제출

※ 다만 합격자는 한 학과(부)의 채용분야를 선택하여야 함

### 2. 지원 자격

※ 임용일 기준 아래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연구실적연수와 교육 경력연수의 합계가 4년 이상인 자 또는 제11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자(별표 1 참고)로서 각 학과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병역을 마쳤거나(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면제받은 자

라. 1959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만 65세 미만)

마. 본교 이외의 타 대학 또는 기관에 전임으로 소속되어 직장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본교 초빙교원에 지원할 수 없음

바. 외국인초빙교수의 경우 외국인에 한함

### 3. 지원 서류(온라인 접수 시 업로드)

- 가. 학위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
- 나.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에 기재한 전체 경력)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 각 1부
  - ※ 외국의 기관 경력자 : 본인이 확인·날인한 국문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증명서 하단에 발급기관의 전화·팩스·이메일·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함
  - ※ 총장 등 기관장이 임용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급, 정규직여부, 유급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함
- 다. 연구 실적 증빙자료(지원서 기재실적 전체)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 각 1부
- 라. 외국인 등록증명서 또는 등록증, 비자, 자국공안기관발행 범죄사실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각 1부 (외국인에 한함) ※ 최근 1년 이내 발행에 한함
  - \* 국외에서 신규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자 또는 기존 국내 체류자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시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제출
- 마. 학과(부)에서 정한 추가 자격 증빙 서류(채용분야 추가자격요건 확인) 1부.

### 4. 지원서 접수

- 가. 대 상 : 초빙교원 공개채용 지원자
- 나. 접수기간 : 2023.12.26.(화) 09:00 ~ 2024. 1. 2.(화) 18:00 [한국시각]
-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본교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 및 업로드한 후 제출완료 버튼 눌러야 접수 완료됨
  - ※ 지원서 및 연구실적 목록, 자기소개서 등을 입력 시 반드시 중간 저장 필수 (일정 시간 입력 중인 상태로 방치할 경우, 자동 로그아웃됨)
  - 2024. 1. 2.(화) 18:00까지 접수완료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서류미비 및 접수확인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라. 문의처 : 전북대학교 국제처 국제협력부 063-270-4382

학 과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국제협력부	063-270-4382	063-270-2099	hyeongseob@jbnu.ac.kr

## 5.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온라인 접수 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 및 제출하여야 함
- \* 외국의 대학 학위 취득자는 학위기 사본 및 본인이 확인·날인한 국문 번역본 각 1부(영문 성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해야 함
  - \* 최종합격자의 경우 외국의 대학 학위 취득자 또는 외국 기관 경력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아포스티유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사본 가능)
  - \* 경력·재직 증명서는 지원 자격에 이용되므로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함
- 나. 2개의 학과(부) 이상 중복 합격하는 경우 한 학과의 채용분야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과목 또는 학과는 임용 포기하여야 함. 포기하지 않을 시 합격한 모든 학과의 임용이 취소됨
- 다. 과목 개편 및 수업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학기 시작 전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 라.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의 허위·표절·착오·누락 등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함
- 마. 제출서류 중 사본임을 명시하지 않은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바. 전형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는 결격사유 조회, 대학인사위원회의 임용 동의를 거친 후 서면계약을 통해 임용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시간의 책임강의를 담당해야 함
-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아. 외국국적 소지자가 최종합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비자 사본, 자국 공안기관발행 범죄사실증명서(미국의 경우 80일 이상 소요)를 임용서류 접수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기 바람
- 자.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예정자 선발을 하지 않거나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재공고 실시에 따라 임용예정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차. 본교 이외의 타 대학에 강사로 임용될 예정이거나 임용된 사람도 본교 초빙 교원 공개채용에 지원 가능하나, 임용예정자로 결정될 경우 타 대학의 강사는 비전업으로 변경됨

카. 본교 비전임교원(강사, 겸임, 초빙교원 등)에 재직중인 사람도 신규 채용에 지원할 수 있으나, 신규채용에 합격하는 경우 기 임용된 직급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

## 6. 채용 일정

가. 접수기간 : 2023.12.26.(화) 09:00 ~ 2024. 1. 2.(화) 18:00 [한국시각]

나. 심사기간 : 2024. 1. 3.(수) ~ 2024. 1. 5.(금)

다. 임용후보자 발표 : 2024. 1월 초(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월 중순(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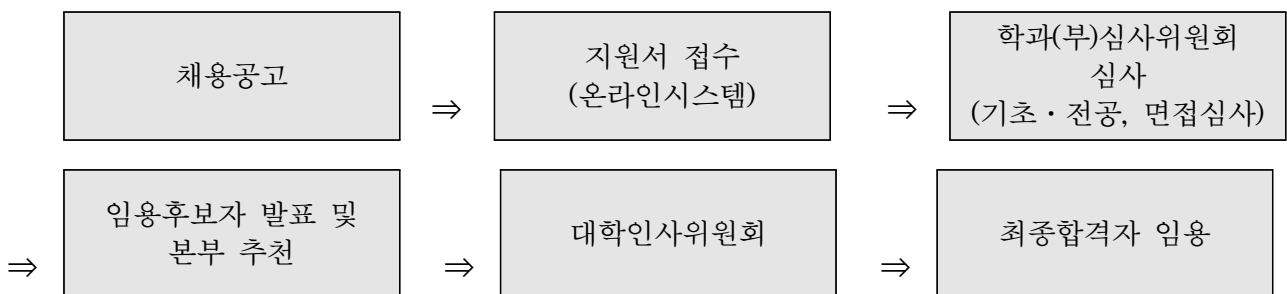
※ 학과(별) 심사위원회의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결과는 본교 채용 사이트(<https://all.jbnu.ac.kr/adm/recruit/index.do>)를 통하여 확인

※ 최종합격자는 학과별 개별 통보(탈락자 별도 통보 생략)

마. 임용일 : 2024. 3. 1.자

바. 채용절차(흐름도)



## 7. 기타 사항

가. 최종합격자의 임용기간 : 2024. 3. 1. ~ 2025. 2.28.(1년)

나.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임용 포기, 긴급하게 결원이 발생 하는 경우, 교과목 추가 등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제도를 통해 정해진 순위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다.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

라. 세부사항 및 변동사항은 본교 홈페이지(<http://www.jbnu.ac.kr/kor/>)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의문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람

학 과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국제협력부	063-270-4382	063-270-2099	hyeongseob@jbnu.ac.kr

붙임 자격기준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환산율 산출기준 1부.

[별표 1] 비전임교원 자격기준 연구·교육경력의 환산율 산출기준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1]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 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	100%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제4조 제1항 제2호의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3]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60%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① 시간강사는 주당 5시간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 ② 비전임교원은 상근인 경우는 100%, 비상근인 경우는 시간강사 경력에 준해서 인정함	30% ~ 100%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70%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p>[4] 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li> <li>2. 법학실무교원으로 지원한 자가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한 경력</li> <li>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li> </ol>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li> <li>5.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li> <li>6.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li> <li>7.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li> <li>8.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li> <li>9.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li> <li>1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li> <li>11.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li> <li>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li> <li>13.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li> <li>14.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li> <li>15.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li> </ol>	70%